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5	제 정 일 자	2013.08.28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024. 7. 23 (2)	쪽 번 호	1 / 3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제 1 장 총칙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법 5 조 규칙 28~49 조 [별표 4~18]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은 허가 받은 저장소, 제조소 외의 장소에서 취급금지 -제조소등에서는 “규칙 [별표 18]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준수/시설설치 -제조소등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소화설비,경보설비, 피난설비의 기준” 준수/시설설치 및 형식승인 받은 소방설비 사용			-소방계획서	
제 2 장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법 6 조 영 6 조 규칙 6~10 조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위치,구조,설비 변경하고자 하는자는 허가/변경허가를 득해야 하며,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자는 변경 신고 실시 -이때, 다음의 제조소등은 한국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서를 허가서류에 첨부 제출 1. 제조소.일반취급소(지정수량 3000 배 이상) 2. 옥외탱크저장소(50 만 리터 이상), 암반탱크저장소			-위험물제조소등완공검사필증 1)제 23-0196-860772 호 ☞ 옥내탱크저장소 A 2)제 23-0197-860772 호 ☞ 옥내탱크저장소 B 3)제 23-0199-030123 호 ☞ 옥내저장소	
	탱크안전성능검사	법 8 조 영 8 조,9 조 규칙 12~18 조	다음의 위험물탱크는 설치,변경공사를 하는경우 완공검사 전에 시,도지사로부터 탱크안전 성능검사 수검. 1. 기초.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 만 L 이상인 탱크 2. 충수(充水).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3. 용접부검사 :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해당 없음	
	완공검사	법 9 조 영 10 조 규칙 19,20 조	제조소등 허가 받은 후, 제조소등을 설치완료 또는 변경공사 완료 후, 완공검사 수검 및 적합판정 이전에 제조소등 사용 금지			-위험물제조소등완공검사필증	
	위험물시설의 유지, 관리	법 14 조	제조소등 관계인은 법 5 조 4 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등을 유지,관리			-소방계획서	
제 3 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자	법 15 조 영 11~13 조 규칙 53~59 조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취급자격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운영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 받은 경우,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업무 수행			-안전관리자[선임,퇴임,퇴직] 신고서	
	예방규정	법 17 조 영 15 조 규칙 63 조	다음의 제조소등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및 준수 1. 지정수량의 10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 절차서 ☞ 예방규정 작성 대상에는 해당 되지 않으나, 내부관리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 절차서 작성 운영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법 18 조 영 16,17 조 규칙 64~72 조	-다음의 제조소등 관계인은 제조소등에 대해 정기점검 실시(1 회/년) 및 기록 보존 1. 상기 영 15 조 1~7 호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 취급소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결과서	
			-상기 정기점검대상 제조소등관계인 중, “100 만 리터 이상 옥외저장탱크(특정옥외 탱크저장소)”를 설치한 제조소등관계인은 소방서장으로부터 정기검사 수검			해당 없음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5	제 정 일 자	2013.08.28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024. 7. 23 (2)	쪽 번 호	2 / 3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제 3 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자체소방대	법 19 조 영 18 조 규칙 73~75 조	-다음의 제조소등 관계인은 자체소방대를 설치하고,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지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경비 예)지정수량 3000 배 이상의 제 4 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다음의 경우는 자체소방대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3.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4.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해당 없음 ☞ 내부관리를 위해 소방조직도 작성 운영(소방계획서 참조)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법 19 조의 2 영 18 조의 2 규칙 28 조 <개정:24.7.23 일>	-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금지<개정:24.7.23 일> - 흡연장소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흡연장소를 지정 1. 폭발위험장소외의 장소에 지정하는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로부터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일정한 거리 유지 2. 흡연장소는 옥외로 지정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축물 내에 지정가능 - 흡연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화재예방 조치 실시 1. 흡연장소는 구획된 실(室)로 하되,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실내에 체류하거나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추는 것 2. 소형수동식소화기(이에 준하는 소화설비 포함)를 1 개 이상 비치할 것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가. 표지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위반시 조치사항 등이 포함될 것 나. 건축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할 것	흡연장소 지정 흡연장소에 소화기 비치 금연구역 표지 설치																																			
제 5 장 감독 및 조치 명령	안전교육	법 28 조 영 20 조 규칙 78 조 규칙 [별표 24]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주기적으로 안전교육 수강 <개정 2024. 5. 20.>[별표 24]		교육수료증																																		
			<table><tr><th>교육과정</th><th>교육대상자</th><th>교육시간</th><th>교육시기<개정 2024. 5. 20.></th><th>교육기관</th></tr><tr><td rowspan="3">강습교육</td><td>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td><td>24 시간</td><td>최초 선임되기 전</td><td>안전원</td></tr><tr><td>위험물운반자가 되려는 사람</td><td>8 시간</td><td>최초 종사하기 전</td><td>안전원</td></tr><tr><td>위험물운송자가 되려는 사람</td><td>16 시간</td><td>최초 종사하기 전</td><td>안전원</td></tr><tr><td rowspan="4">실무교육</td><td>안전관리자</td><td>8 시간</td><td>가.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 회</td><td>안전원</td></tr><tr><td>위험물운반자</td><td>4 시간</td><td>가.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 회</td><td>안전원</td></tr><tr><td>위험물운송자</td><td>8 시간</td><td>가.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 회</td><td>안전원</td></tr><tr><td>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td><td>8 시간</td><td>가.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 회</td><td>기술원</td></tr></table>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시기<개정 2024. 5. 20.>	교육기관	강습교육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24 시간	최초 선임되기 전	안전원	위험물운반자가 되려는 사람	8 시간	최초 종사하기 전	안전원	위험물운송자가 되려는 사람	16 시간	최초 종사하기 전	안전원	실무교육	안전관리자	8 시간	가.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 회	안전원	위험물운반자	4 시간	가.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 회	안전원	위험물운송자	8 시간	가.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 회	안전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8 시간	가.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 회	기술원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시기<개정 2024. 5. 20.>	교육기관																																			
강습교육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24 시간	최초 선임되기 전	안전원																																			
	위험물운반자가 되려는 사람	8 시간	최초 종사하기 전	안전원																																			
	위험물운송자가 되려는 사람	16 시간	최초 종사하기 전	안전원																																			
실무교육	안전관리자	8 시간	가.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 회	안전원																																			
	위험물운반자	4 시간	가.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 회	안전원																																			
	위험물운송자	8 시간	가.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 회	안전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8 시간	가.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 회	기술원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5	제 정 일 자	2013.08.28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024. 7. 23 (2)	쪽 번 호	3 / 3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시행령[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 2 조 및 제 3 조 관련<개정 2024. 4. 30.>

위험물			지정수량	비 고
유별	성질	품명		
제 4 류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50L	12.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제 1 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L	13.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수용성액체 400L	14.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 미만인 수용액 나.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 알코올 60중량%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3. 알코올류	400L	15.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4. 제 2 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L	
			수용성액체 2,000L	16. "제3석유류"라 함은 중유, 클레오스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5. 제 3 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L	17.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수용성액체 4,000L	18.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제 4 석유류	6,000L	
		7. 동식물유류	10,000L	

기타 위험물 및 지정수량은 시행령 [별표 1] 참조